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인촌 (국가유산청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제정·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정 근거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시 고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관련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주체와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의 기한,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 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차.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 카. 정기조사 실시 주기, 절차, 방법 및 조사 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 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사유 및 말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 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 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거. 국가등록문화유산 관계 법령의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
- 너.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시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해제 및 구역의 변경 절차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제23조)
- 러.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절차, 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며. 주민들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을 제안 시
요건 및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28조)

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
(안 제29조)

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 절차 및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30조)

어. 예비문화유산 선정 시 세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
31조~제32조)

저. 예비문화유산 실태조사 시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3조)

쳐. 예비문화유산 선정 취소 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4조)

커.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
35조)

터.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6조)

퍼.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에 대한 위탁 사
항을 규정함(안 제37조)

허.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생략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조(등록 및 말소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의 이유 또는 등록 말소의 이유

제5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당시 조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변경 및 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

(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
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
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
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
록할 때 등록된 면적

제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
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가유
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
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
상 행위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과 법 제8
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필수보존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국가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0조(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받은 자의 변경
2. 허가기간의 연장
3.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제11조(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

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12조(정기조사의 주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등록문화유산
4.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3조(정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정기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② 정기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은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정기조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14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제15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2.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에 따른 가치재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안내판 또는 경고판의 설치

2.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영인본 또는 복제품의 제작

제1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
2.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4.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2. 등록문화유산이 주변 지역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관적 의미를 가져 종합적인 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

3.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의 주변 지역과 함께 정비·복원 등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계획

3. 해당 지역의 역사적 환경의 보존 필요성 및 학술적 중요성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려면 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여부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지역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구역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그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명칭 및 구역
2. 지정, 구역 변경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2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활용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용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용계획을 확정하려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 제안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용계획을 확정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관적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 지구 내의 건축 또는 경관에 대한 이미지 가이드라인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관리조직(주민자치조직)·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 및 제한)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27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시행 및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의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제안서의 처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6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을 제안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범위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37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미관이나 경관을 향상시킬 것

제3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홍보 및 안내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신청접수기간
3. 구비서류
4. 지원규모
5. 지원절차
6. 그 밖의 신청·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교육, 홍보 및 안내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를 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등록문화유산 등록 건수
2.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평가 결과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4.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기준) 법 제44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2.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가 기대되는 것
3. 다수 국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형의 것

제32조(예비문화유산의 신청 및 선정 절차) ① 제31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국가유

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근현대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2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실태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은 직접 조사하거나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3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예비문화유산의 멸실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예비문화유산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예비문화유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④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선정 취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는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2.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유산교육
3. 근현대문화유산을 용도에 적합하게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를 받으려는 금액

제36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자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6.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가유산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 실태 조사 업무
2. 법 제51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및 그 지원 업무
3.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법 제54조에 따른 정보교류 등의 지원 업무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문화유산·자연유산의 복원과 문화유산· 자연유산 관리용 건 축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한정한다.
--	---

별표 3 제33호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한다.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2)(가)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중 “국가등록문화유산과”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로 한다.

⑧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는 삭제한다.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등록된 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으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등록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
등록문화유산

⑮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
유산

⑯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
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⑰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110조의2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별표 1 제2종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반출의 허가

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⑲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토지이용규제 기본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로 한다.

㉕ 향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2항	100	150	200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다. 법 제17조제1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2호	500	500	500
라.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연 락 처	(042) 481 - 4908